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8318      |
| 의 퇴 인 | 엄태영 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6. 8. 10. |
| 추계번호  | 26B2171      |

#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55조의2(친환경농수산물등 구매의무) 신설 |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제5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(이하 이 조에서 “친환경농수산물등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br>1. 구매하고자 하는 식재료의 품목에 친환경농수산물등이 없는 경우<br>2.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<br>3.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농수산물등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55조의2(친환경농수산물등 구매의무) 신설 | • 제3호<br>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#### □ 친환경농수산물등 구매의무(안 제55조의2 신설)

-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

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또한,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, 각군 부대,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등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<sup>1)</sup>

－ [참고자료] 지방자치단체별 친환경 학교급식(식재료) 지원사업 현황 참고

- 개정안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(이하 “친환경농수산물등”이라 함)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식재료 구매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친환경농수산물등 식재료 구매와 관련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### Ⅲ. 부대의견

#### □ 없음

1)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55조(우선구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
2.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라 설치된 각군 부대와 기관

3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
4. 농어업 관련 단체 등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I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김성원 | 예승우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|
| 김성원 | 02-6788-4650 | holyone@assembly.go.kr |

[참고자료] 지방자치단체별 친환경 학교급식(식재료) 지원사업 현황

| 구분 | 2026 예산(백만원) |         |  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계            | 시도비     | 시군구비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합계 | 762,114      | 403,176 | 358,938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울 | 377,992      | 225,649 | 152,343 | ○ 지원단가 : 1일 1식(중식), 초 4,540원, 중 4,969원, 고 5,159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산 | 9,457        | 9,457   | -       | ○ 부산시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각 학교에서 직접 구매<br>○ 지원단가 : 1일 1식 380원(190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구 | 3,209        | 1,565   | 1,644   | ○ 지원대상 : 초등학교-전체, 중학교-중·서·남구, 군위군, 고등학교-군위군<br>○ 지원단가 : 1일 1식 140원(초 187일, 중 185일, 고 180일) |
| 인천 | 17,407       | 10,444  | 6,963   | ○ 쌀 현물지원 포함 친환경 식품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광주 | 14,245       | 11,942  | 2,303   | ○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 구입비용 지원(1식당 900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전 | 10,371       | 8,297   | 2,074   | ○ 지원대상 : 144,967명/416교(공립유치원, 초·중·고, 특수학교)<br>○ 지원단가 : 1인1식380원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울산 | 9,396        | 4,698   | 4,698   | ○ 지원단가 : 1일 1식 426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세종 | -            | -       | -       | ○ 별도의 친환경 식재료 지원은 없으며, 무상급식 지원사업 내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 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기 | 54,706       | 27,353  | 27,353  | ○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의 급식공급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강원 | 58,022       | 29,011  | 29,011  | ○ 학기중 중식 식품비 지원(무상급식, 1식 평균 3,704원) 중 우수농산물 구입비 추가 지원(1식 510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충북 | 16,492       | -       | 16,492  | ○ 친환경 농축산물 구입단가 차액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충남 | 83,082       | 30,875  | 52,207  | ○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외 금액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충당(무상급식 사업비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북 | 6,475        | 3,108   | 3,367   | ○ 도내산 친환경농산물(쌀포함)구입비 일부(차액) 지원<br>○ 지원단가:1인1식(중식)유340원,초350원,중460원,고420원                   |
| 전남 | 35,380       | 8,844   | 26,536  | ○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비 지원<br>○ 지원단가 : 1인 1식(중식) 어 735원, 유·초 805원, 중 901원, 고 945원         |
| 경북 | 40,534       | 8,288   | 32,246  | ○ 지원단가 : 1인 1식(중식) 초 850원, 중 950원, 고 1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남 | 4,252        | 2,551   | 1,701   | ○ 친환경 쌀 구입비 차액 우선집행 후, 잔액으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주 | 5,104        | 5,104   | -       | ○ 친환경급식 식재료비 차액지원, 도 50%, 교육청 50%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